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	서울남부지청	02)2639-2100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서울북부지청	02)950-9880
서울동부지청	02)403-0009	서울관악지청	02)3281-0009
서울서부지청	02)713-0009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031)259-0204	안양지청	031)463-7300
의정부지청	031)877-0009	안산지청	031)412-1992
고양지청	031)931-2800	평택지청	031)646-1129
성남지청	031)788-15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45	강릉지청	033)650-2500
인천북부지청	032)540-7910	원주지청	033)769-0800
부천지청	032)714-8700	태백지청	033)550-8609
강원지청	033)269-3551	영월출장소	033)374-000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	울산동부지청	052)259-3300
부산동부지청	051)559-6688	양산지청	055)387-0009
부산북부지청	051)309-1500	진주지청	055)752-0009
창원지청	055)239-6500	통영지청	055)650-1951
울산지청	052)272-000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200	구미지청	054)450-3500
대구서부지청	053)605-9000	영주지청	054)639-1111
포항지청	054)271-6700	안동지청	054)851-80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2)975-6200 064)728-7100	군산지청	063)452-0009
전주지청	063)240-3400	목포지청	061)280-0100
익산지청	063)839-0009	여수지청	061)650-02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90	충주지청	043)840-4000
청주지청	043)299-1128	보령지청	041)930-6138
천안지청	041)560-2800	서산지청	041)661-5630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 2027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

시간급 예시

시간급 10,6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10,600원** <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급 예시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53,200원을 받는 경우

253,200원 ÷ 24시간 **10,550원** <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10,550원(253,200원÷24시간)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24시간(1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일급 예시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84,000원을 받는 경우

84,000원 ÷ 8시간 **10,500원** <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10,500원(84,000원÷8시간)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월급 예시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215,400원을 받는 경우

2,215,400원 ÷ 209시간 **10,600원** <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10,600원(2,215,400원 ÷ 209시간)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209시간 {(1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7. 1. 1. ~ 2027. 12. 31. 적용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7. 1. 1. ~ 2027. 12. 31. 적용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 포털시스템 접속(https://kssc.mods.go.kr:8443) → 한국표준직업분류 선택 → 분류코드 또는 직종을 입력 후 검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됩니다.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7년 1월 급여 **2,485,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740,000원	기본급	1,740,000원
직무수당	100,000원	직무수당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300,000원	상여금	145,000원
상여금	145,000원		
계	2,485,000원	계	2,185,0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74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145,000원 지급)		※ 식대·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 ※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산입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0,455원(2,185,000원 ÷ 209시간)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 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